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고발 국회의원 지위·선거 임박 시점·다중에 공개된 SNS 이용 ... 죄질 매우 나빠

-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 알면서 ‘악의적’으로 공표 ... 낙선 목적 명백
- 피고발인, 주기적·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적시·근거 없는 비난 일삼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산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전략본부 본부장으로서, 특히 이 후보 등을 비난하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낙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어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즉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황병기 변호사를 통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은 누가 봐도 국군 수도통합병원의 특실 입원실이 아닌 휴게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악의적으로 특실에 입원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후보의 아들이 8년 전 공군 복무 중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에서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중략)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한다” 고 판시했다(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모씨가 △발목인대파열 부상을 입어 수술을 위하여 청원휴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한 사실이 없고 적법절차를 밟아 입원한 것이며 △다른 입원환자들과 마찬가지로 6인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또한 3개월이 아닌 약 한달 반가량” 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대통령선거가 불과 40여 일 남아 매우 임박한 시점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다수인이 접근가능한 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 고도 강조했다.

피고발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2022.1.26. “공군에서는 청원휴가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후보 장남의 청원휴가 기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발언하였고, 2022.1.27. “연평도 포격 중상입은 장병들도 6인실에 있는데 이동호 인대파열로 특실 3개월??” 이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게시한 바 있으며, 피고발인의 본건 게시물에 관한 내용이 기사화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0조 제2항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